

제405회 임시회

'22. 11. 23.(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## 3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정)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,
- 조례에서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전체 조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별로 “장”으로 구분·신설(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)
-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(안 제2조제5호, 제4조, 제11조제1항, 제14조제3항 및 제15조)
-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신설(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, 별지 제3·4호서식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11조, 별지 제1·2호서식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정)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전체 조문의 수가 30조로 늘어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5개의 장으로 나누는 개정안은 적절해 보임.
-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조항은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·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,
  - 안 제24조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25조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,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,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.
  - 안 제26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.
  - 안 제27조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

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28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.
- 안 제29조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음.
- 안 제30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기존 조례에서는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했는데, 개정안을 통해 도민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